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202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 이상 승무하지 않도록 배차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후 24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p><input type="checkbox"/>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p> <table border="1"> <tr><td>1차 : 120만원</td></tr> <tr><td>2차 : 240만원</td></tr> <tr><td>3차 : 360만원</td></tr> </table> <p>- 사업일부정지</p> <table border="1"> <tr><td>1차 : 20일</td></tr> <tr><td>2차 : 40일</td></tr> <tr><td>3차 : 60일</td></tr> </tabl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운수종사자 실명제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카드 결제단말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이상시 승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교육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p><input type="checkbox"/>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p> <table border="1"> <tr><td>1차 : 120만원</td></tr> <tr><td>2차 : 240만원</td></tr> <tr><td>3차 : 360만원</td></tr> </table> <p>- 사업일부정지</p> <table border="1"> <tr><td>1차 : 20일</td></tr> <tr><td>2차 : 40일</td></tr> <tr><td>3차 : 60일</td></tr> </tabl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택시운전 자격증명 반납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3일(퇴직일 ·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p><input type="checkbox"/>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p> <table border="1"> <tr><td>1차 : 120만원</td></tr> <tr><td>2차 : 240만원</td></tr> <tr><td>3차 : 360만원</td></tr> </table> <p>- 사업일부정지</p> <table border="1"> <tr><td>1차 : 20일</td></tr> <tr><td>2차 : 40일</td></tr> <tr><td>3차 : 60일</td></tr> </tabl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다음 조건을 갖춘 기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 -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표준사항과 통신규약을 준수하고, 시속 120km 이상 주행시 과속 경보음 발생 기능 탑재 ○ 장착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앱 등이 개발된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p><input type="checkbox"/>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p> <table border="1"> <tr><td>1차 : 120만원</td></tr> <tr><td>2차 : 240만원</td></tr> <tr><td>3차 : 360만원</td></tr> </table> <p>- 사업일부정지</p> <table border="1"> <tr><td>1차 : 20일</td></tr> <tr><td>2차 : 40일</td></tr> <tr><td>3차 : 60일</td></tr> </tabl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모든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1주일 동안(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 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매주1회 서울특별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첫 평일 18:00까지)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6개월간 (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이월 말(7월말 또는 이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대체미터기(앱 등)를 사용하는 고급 택시 및 대형승합택시 등은 1개월간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이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차 : 120만원</td></tr> <tr><td>2차 : 240만원</td></tr> <tr><td>3차 : 360만원</td></tr> </table> - 사업일부정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차 : 20일</td></tr> <tr><td>2차 : 40일</td></tr> <tr><td>3차 : 60일</td></tr> </tabl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후불교통카드 인식 터치패드(교통카드 리더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다만, 고급택시 및 대형승합택시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별도의 위치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것도 인정한다. ○ 설치된 카드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및 위치 설정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위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카드단말기 위치는 택시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마그네틱 카드 및 IC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본체는 조수석 앞 왼쪽(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단,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단 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장비본체 설치 	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차 : 120만원</td></tr> <tr><td>2차 : 240만원</td></tr> <tr><td>3차 : 360만원</td></tr> </table> - 사업일부정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차 : 20일</td></tr> <tr><td>2차 : 40일</td></tr> <tr><td>3차 : 60일</td></tr> </tabl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토록 해야 하며 차고지 밖에서 관리(교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예외는 인정되되, 반드시 신고한 교대장소와 시간대에 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p>※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등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 택시는 예외로 한다.</p>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법 제85조제1항제13호에 의해 처분한다.</p>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p>법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차 : 120만원</td></tr> <tr><td>2차 : 240만원</td></tr> <tr><td>3차 : 360만원</td></tr> </table> - 사업일부정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차 : 20일</td></tr> <tr><td>2차 : 40일</td></tr> <tr><td>3차 : 60일</td></tr> </tabl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택시 내·외부 광고부착물 (공익성 홍보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내·외부 광고부착물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택시광고사업 관리위원회 심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p>법 제2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차 : 120만원</td></tr> <tr><td>2차 : 240만원</td></tr> <tr><td>3차 : 360만원</td></tr> </table> - 사업일부정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차 : 20일</td></tr> <tr><td>2차 : 40일</td></tr> <tr><td>3차 : 60일</td></tr> </tabl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개인택시 부제운행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천환경택시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대응형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를 제외한 전체 개인택시를 4개조로 구분하여 개인택시조합의 조편성에 따라 가, 나, 다 조는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행하고, 나조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월요일 오전반 (04~16시)에 휴무하는 조와 매주 수요일, 일요일과 목요일 오전반 (04~16시)에 휴무하는 조로 구분한다. - 운행차량의 운행개시는 운휴일 익일 04:00부터로 한다. 단 나조는 월요일 목요일에는 16:00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 운행차량은 07:00~10:00, 19:00~24:00 시간대는 정상 운행 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 시간으로 하되,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익일 운행차량은 익일 운행차량이 운송을 개시할 때까지의 운행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익일 04:00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04:00 이전 탑승 승객에 한하여 목적지까지 운송 할 수 있다. - 4개조 구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지정한다. <p>○ 수요 대응형 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21:00~익일 09:00까지이며, 운행시간 중 21:00~익일 04:00 시간대는 정상 운행 시간으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자율운행시간으로 한다.</p> <p>- 휴무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21:00까지로 한다.</p> <p>○ 서울특별시장은 특정기간, 특정시간대 등 택시수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거나, 의무운행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p> <p>- 특정기간이라 함은 연말연시, 명절(설날, 추석), 대학입학시험일, 폭설,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파업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행사(국내, 국제) 개최 등을 말한다.</p> <p>- 매주 금요일 23시부터 익일 04시까지는 부제를 해제한다.</p> <p>- 택시수급 부족 시간대 택시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달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할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무 운행 시간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개인택시 부제표시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개인택시(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천환경택시 제외)</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p>○ 외부표시</p> <p>- 모양 : 운휴조에 따라 각각 개인 가 개인 나 개인 디 개인 오라 개인 이라 개인 9의 형태로 사각형 안에 「개인」, 운휴조, 조합명을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운휴조별로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바탕 색상을 “가” 조는 파란색, “나” 조는 오렌지색, “다” 조는 초록색, “라” 조는 보라색(목)과 자주색(월), 수요 대응형 택시 “9”조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글씨로 한다.</p> <p>운휴조에 따라 각각 가, 나, 디, 오라, 이라, 9로 타원형 (120mm×95mm)안에 운휴조, 고유번호 번호, 조합명을 표시하고 적인을 날인한 표지를 부착한다.</p> <p>※ 가맹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양을 달리 할 수 있음</p> <p>- 규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측 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뒷 유리창 : 가로120mm × 세로95mm <p>- 부착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측 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이 사이 중앙에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에 부착한다. ○ 뒷 유리창 : 뒷 유리창 중앙에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한다. ○ 단, 측면광고부착시 개인택시 부제표시 부착위치 조정을 허용한다.(일반택시의 회사명, 관리번호 위치로 이전부착 허용) <p>※ 부제표시 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한 때, 과·훼손 되었을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단, 퇴색된 표시증을 부착하거나 견고하게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1차는 적발시 경고조치를 취하고 2차 적발시 미부착으로 간주한다.</p>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별표6〕 위반행위 '라'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 운행정지 10일 -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택시운전 자격증명 등 개시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택시운전자격증명 등 계시 및 간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전자격증명 : 가로 148mm × 세로105mm ○ 부착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전자격증명 : 조수석 앞 선반 위 (에어백 설치 차량의 경우 조수석 전방 유리창 우측 상단 모서리) ○ 위 부착물상의 사진과 글씨가 선명한 상태로 계시하여야 하며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조합에서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 위 택시운전자격증명(계시용) 등의 사진이나 글씨가 뒷좌석에서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마멸 또는 훼손된 상태로 부착된 경우 위 부착물 미부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부착물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을 부착을 금지한다. ○ 부당 시계와 할증 적용 등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택시 미터기 화면에 어떠한 부착물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p>【택시운전자격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6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8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2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하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1조, 법 제26조	<p>【택시운전자격 증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1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회 : 10만원</td> </tr> <tr> <td>2회 : 15만원</td> </tr> <tr> <td>3회 : 20만원</td> </tr> </table> <p>【지정부착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1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차 : 20만원</td> </tr> <tr> <td>2차 : 40만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정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1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1차 : 5일</td> </tr> <tr> <td>2차 : 10일</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10만원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1차 : 5일	2차 : 10일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1차 : 5일										
2차 : 10일										
택시 외부표시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 : 택시표시등 및 빙차(예약)표시등 설치, 차량색상, 택시표시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표시등(방법등) 및 빙차(예약)표시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착위치 : 택시표시등(설내등을 기준으로 루프 중앙) 빙차표시등(앞 유리 중앙 상단) 	법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 							

구 分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택시표시등) : 가로400mm × 세로250mm × 높이140mm - 색상 : 아래 표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구 분</td> <td>앞/뒷면바탕색</td> <td>앞/뒷면글자색</td> <td>옆면/윗면바탕색</td> </tr> <tr> <td>일반택시</td> <td>SCN017</td> <td>한강은백색</td> <td>꽃담황토색</td> </tr> <tr> <td>개인택시</td> <td>한강은백색</td> <td>파란색/SCN019</td> <td>꽃담황토색</td> </tr> </table>	구 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윗면바탕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SCN019	꽃담황토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구 분</td> <td>앞/뒷면글자</td> <td>후면글자</td> <td>우측/좌측</td> </tr> <tr> <td>일반법인</td> <td>서울</td> <td>TAXI</td> <td>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td> </tr> <tr> <td>개인택시</td> <td>서울</td> <td>TAXI</td> <td></td> </tr> </table>	구 분	앞/뒷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구 분	앞/뒷면바탕색	앞/뒷면글자색	옆면/윗면바탕색																								
일반택시	SCN017	한강은백색	꽃담황토색																								
개인택시	한강은백색	파란색/SCN019	꽃담황토색																								
구 분	앞/뒷면글자	후면글자	우측/좌측																								
일반법인	서울	TAXI	양쪽 CARD+ (해치), 카드불가시 양쪽 해치																								
개인택시	서울	TAX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 : 아래 표와 같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구분</td> <td>바탕색</td> <td>글씨</td> <td>전면글자</td> <td>측면글자</td> <td>후면글자</td> </tr> <tr> <td>모범택시</td> <td>황색</td> <td>흑색</td> <td>TAXI모범</td> <td>개인</td> <td>모범</td> </tr> <tr> <td>대형택시 (승용)</td> <td>황색</td> <td>흑색</td> <td>대형TAXI</td> <td>법인(개인)</td> <td>TAXI</td> </tr> </table>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 (승용)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구분	바탕색	글씨	전면글자	측면글자	후면글자																						
모범택시	황색	흑색	TAXI모범	개인	모범																						
대형택시 (승용)	황색	흑색	대형TAXI	법인(개인)	TAX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 및 대형(승용) 등 색상 및 글씨 : 아래 표와 같다. 		<p>* 운송가맹사업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표시등, 빙차표시등은 미터기 작동시 점등/소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 택시표시등에 차량내부의 위급상황을 알리는 점멸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p>* 모범운전자 택시표시등은 2010.4.16.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내용을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형택시(법인·개인) : 흰색(백우색), 은색(은황색), 완전꽃담황토색 - 모범택시, 대형택시 : 검은색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전기택시, 운송가맹점 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의 색상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택시표시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택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내 용</td> <td>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td> </tr> <tr> <td>규 격</td> <td>□ 회사명(H60mm×W변화차수)/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차수)</td> </tr> <tr> <td>색상 및 서체</td> <td>□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td> </tr> <tr> <td>표시위치</td> <td>□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td> </tr> </table>	내 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 격	□ 회사명(H60mm×W변화차수)/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차수)	색상 및 서체	□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																
내 용	회사명 + 택시관리번호 3자리																										
규 격	□ 회사명(H60mm×W변화차수)/차량관리번호 (H50mm×W변화차수)																										
색상 및 서체	□ SC2105(서울색), 서울남산체 Extra Bold																										
표시위치	□ 양측면 : C-필러 부분의 뒤창 끝선에 맞추어 정렬 □ 후면 : 트렁크 뒤의 번호판 우측 상단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택시 외부표시 : 「개인택시 부제표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택시의 경우 개인 친환경 표시를 양쪽 앞문에 부착한다. - 기타 모범, 대형, 브랜드 택시 등의 표시문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의 문자표시, 해치로고, 브랜드эм블럼, 콜센터 전화번호 표시 위치와 크기, 색체, 서체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표시방법 등을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변조 표시 한때, 과태료·퇴색 되었거나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부착으로 간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장애인콜택시로 전환한 개인택시,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협동조합택시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적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또는 동법시행령〔별표6〕 위반행위 '라'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 											
친절 운행 이행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배차시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영상기록장치 등을 통한 입증이 가능한 사항)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지시된 사항은 문서로 기록·관리 ○ 운수종사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제49조〔별표6〕 위반행위 더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p>법 제23조, 법 제26조</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td> </tr> <tr> <td>1차 : 120만원</td> </tr> <tr> <td>2차 : 240만원</td> </tr> <tr> <td>3차 : 360만원</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 사업일부정지</td> </tr> <tr> <td>1차 : 20일</td> </tr> <tr> <td>2차 : 40일</td> </tr> <tr> <td>3차 : 60일</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td> </tr> </table>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 운송사업자 - 과징금 또는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												

구 分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복장지정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운행 전 점검하여야 하며, 금지복장을 착용한 운수종사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운수종사는 금지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 지정 복장이 있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p>〈 택시 금지복장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구 분</th><th>금 지 복 장</th></tr> <tr> <td>상 의</td><td> <input type="checkbox"/> 졸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input type="checkbox"/> 미풍양숙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input type="checkbox"/>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td></tr> <tr> <td>하 의</td><td> <input type="checkbox"/> 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짹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td></tr> <tr> <td>모 자</td><td> <input type="checkbox"/>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input type="checkbox"/> 낚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td></tr> <tr> <td>신 발</td><td> <input type="checkbox"/>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input type="checkbox"/>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td></tr> <tr> <td>기 타</td><td> <input type="checkbox"/>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td></tr> </table>	구 분	금 지 복 장	상 의	<input type="checkbox"/> 졸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input type="checkbox"/> 미풍양숙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input type="checkbox"/>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 의	<input type="checkbox"/> 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짹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 자	<input type="checkbox"/>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input type="checkbox"/> 낚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 발	<input type="checkbox"/>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input type="checkbox"/>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 타	<input type="checkbox"/>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p>법 제21조, 법 제26조</p>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 <td>○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td> </tr> <tr> <td>1차 : 3일</td> </tr> <tr> <td>2차 : 5일</td> </tr> </table> <p><input type="checkbox"/> 운수종사자 - 과태료10만원</p>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 3일	2차 : 5일	
구 분	금 지 복 장																	
상 의	<input type="checkbox"/> 졸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런닝셔츠 <input type="checkbox"/> 미풍양숙을 저해하는 문구 등으로 디자인된 상의 <input type="checkbox"/> 소매가 지나치게 늘어져 핸들 조작에 지장을 주는 옷																	
하 의	<input type="checkbox"/> 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짹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등																	
모 자	<input type="checkbox"/>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input type="checkbox"/> 낚은 모양 또는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신 발	<input type="checkbox"/>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 등 신발류 <input type="checkbox"/>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운행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뒷굽이 높은 하이힐 등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지장을 주는 신발																	
기 타	<input type="checkbox"/>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감염병 등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따른 정부권고시 제외)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1차 : 3일																		
2차 : 5일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법제85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3〕 위반내용 제26호 더목에 의한 운행정지 또는 동법시행령〔별표5〕 위반내용 제18호 너목에 의한 과징금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제9호, 법제94조제3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적용 - 동법시행령〔별표6〕 위반행위 더목에 따른 과태료 처분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교 육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 교육 당일 특별근로(공가처리) 등 교육의무를 다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수종사는 운송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85조 제1항 제23호, 법 제88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43조 (별표3) 위반내용 제28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46조 (별표5) 위반내용 제2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법 제26조 제1항 제9호, 법 제94조 제3항제4호 적용 -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더복에 따른 과태료 처분 	법 제25조, 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30만원 2차 : 60만원 3차 : 90만원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5일 2차 : 10일 3차 : 15일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10만원
법인택시 근로현황 공개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투명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해 운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사이트를 통해 각종 급여(기본급, 수당 등),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 등),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해야한다. - 각종 급여에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금은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야한다. - 공개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의 적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영도록 해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법인택시 구인활동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일반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교통회관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장 (성산동, 하계동) 부지 및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신규택시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구인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택시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인활동은 예외로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방역 강화	<p><input type="checkbox"/> 대 상 : 택시</p> <p><input type="checkbox"/>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감염증 등의 유행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1급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경우 승객 탑승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 하여야 한다. <p><input type="checkbox"/> 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가 규정 위반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운행개시전 마스크를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면제한다.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적용 -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위반행위 더복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3조, 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 사업일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 운수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10만원
부칙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